

제 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황인구 의원 등 31명 발의)

제 안 설 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황인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적 사명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발맞춰  
1999년 제주도 감귤 보내기 사업을 시작으로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한민족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불확실한 위상과  
법·제도의 미비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통일정책의 일부분, 하위 개념으로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이에 본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장’을 포함 하도록 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서 정부의 통일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